

● 제299회 ●
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**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검토보고서  
(의안번호 : 2181)**

2021. 2. 26.

보건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# 【김화숙 의원 대표발의】

의안번호 2181

### I . 조례안 개요

#### 1. 제안경위

- 가. 제 안 자 : 김화숙 의원 대표발의(외 29명)
- 나. 제출일자 : 2021년 2월 5일
- 다. 회부일자 : 2021년 2월 9일

#### 2. 제안이유

-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은 식품부터 생활용품 까지 그 영역을 점차 넓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 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음. 최근 경기 침체 등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. 하지만 현행 조례는 상위법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대비하여 그 내용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.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,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.
- 이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사항 및 보조금 지원, 교육·홍보, 평가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 더불어 조례 개정을 통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을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반영함.(안 제6조)
- 나.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7조 신설)
- 다.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8조 신설)
- 라.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 대상 교육을 구체적으로 명시함.(안 제10조)
- 마. 보조금 지원 사항으로 기부식품 등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·신체에 발생한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를 추가 함.(안 제11조)
- 바. 식품등 기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12조)
- 사.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4조 신설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 1 개정안의 취지

- 동 조례 개정안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, 취약계층의 증가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. 이에 상위법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수정 및 보완하고 사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음.

###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#### 가.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(안 제6조)

- 동 조례 개정안 제6조는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되고 있으며,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고 되어있음. 하지만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가 2017.1.31.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관련된 본 조항의 조문을 삭제하려는 사항임.

#### 나. 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 (안 제7조)

- 개정안 제7조는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1)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,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

1) **제7조(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·시행)**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·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
2.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
3.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
4.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원·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·시행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.

- 세부사항으로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·지원계획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, 종사자 교육,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, 손해보험료 지원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음.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u>제7조(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·시행)</u> 시장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·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·지원계획</p> <p>2.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3.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</p> <p>4.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</p> <p>5. 손해보험료 지원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</p> <p>6.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

## 다.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(안 제8조)

- 동 조례 개정안 제8조는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 22)에 따라 ‘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’를 지정하고,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. 서울시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‘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’를 의미함.
- 「2020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」에 따른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업무는 광역 단위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조정·배분 및 기초푸드뱅크·마켓의 전반적인 관리 수행으로 볼 수 있음.
  - 안 제8조의 개정사항인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세부 업무는 「2020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」에 명시된 사항임.

### ■ 광역기부식품등 지원센터의 역할

- 광역 단위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조정·배분
- 기초푸드뱅크·마켓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식품위생교육, 자살예방교육, 기부물품관리시스템(FMS) 교육 등 실시

2) **제3조의2(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)**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·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,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

2.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⑤ 제1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사업자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,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, 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기초푸드뱅크·마켓 운영·관리 지원
  -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홍보
  - 사업계획 수립(운영위원회 포함) 및 실적보고(관할 시·도 및 전국지원센터)
  -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(기초푸드뱅크·마켓) 실태조사
  - 광역 및 관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(기초푸드뱅크·마켓) 통계 관리(전국지원센터 연계)
  -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(기초푸드뱅크·마켓) 점검
- ※출처: 「2020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」 (p16), 보건복지부

○ 안 제8조 5항 및 6항은 센터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서울시광역푸드뱅크센터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<sup>3)</sup>에 근거하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.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광역푸드뱅크센터 위탁근거를 명확화 하는 것에 대해 쟁점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음.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u>제8조(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</u> <u>시장은 법 3조의2에 따라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</u> <u>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p><u>1. 광역 단위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조정·배분</u></p> <p><u>2. 기초푸드뱅크·마켓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식품위생교육, 자살예방교육, 기부물품관리시스템(FMS)교육 등 실시</u></p> <p><u>3. 기초푸드뱅크·마켓 운영·</u></p>

## 관리 지원

### 4.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

#### 실태조사

### 5. 광역 및 관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(기초푸드뱅크·마켓) 통계 관리

### 6.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점검

### 7.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③ 제1항에 따른 광역기부식품 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그밖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법 3조의2, 시행령 4조의2에 따른다.

⑤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.

3) 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## 라.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 교육 · 홍보(안 제10조)

- 개정안 제10조에서는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 대상 교육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열거하여, 식품위생교육 뿐만 아니라 기부물품관리시스템(FMS) 활용교육, 개인정보 보호교육, 자살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현 행	개 정 안
<u>제11조(교육 · 홍보)</u> ① 시장은 직 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 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<u>위 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u>	<u>제10조(교육 · 홍보)</u>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식품</u> <u>위생교육, 기부물품관리시스템</u> <u>(FMS) 활용교육, 개인정보 보</u> <u>호교육, 자살예방교육 등</u> ----. 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- 「2020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」에 의하면 식품등 제공 종사자 대상 4종 필수 교육(식품위생교육, 기부물품관리시스템(FMS) 활용교육, 개인정보 보호교육, 자살예방교육)을 연 1회 이상 수료하도록 명시되어 있음. 그러므로 필수교육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.

- 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  - ② 삭제

## 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

### ○ 필수교육

- 연간 1회 이상 식품위생교육 수료
- 연간 1회 이상 기부물품관리시스템(FMS) 활용교육 수료
- 연간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 수료
- 연간 1회 이상 자살예방교육 수료

### ○ 권장교육

- 직무능력 향상 교육 수료
- 정보화 교육 수료

※출처: 「2020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(p27,p33) 자료 재구성, 보건복지부

## 마. 보조금 지원(안 제11조)

- 동 조례 개정안 제11조는 기부식품등 제공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사항으로 ‘기부식품 등을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 의 생명·신체에 발생한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’를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이는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9조<sup>4)</sup>에 따른 기부식 품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써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보험료의 일부 및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 규 정에 따른 사항임.

4) **제9조(이용자 보호)**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 
②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 용자의 생명·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 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## 바. 식품등 기부사업 실태조사(안 제12조)

- 동 조례 개정안 제12조는 식품등 기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후,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서울시 및 서울시광역푸드뱅크센터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필요에 따라 추가 실태조사도 시행하고 있음.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식품등 기부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도록 유도함으로써,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짐.

### 〈2020년 서울시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실태조사〉

- 사업기간 : '20. 7.27.~ 8.13.
- 대상 : 25개 자치구 푸드뱅크·마켓 28개소(운영주체별)
- 주요내용
  - 시설 일반현황, 기부물품 제공내역 및 재고현황, 코로나19에 따른 운영사항
  - 수익사업에 대한 사항
- 수행인력 : 서울시 2인, 서울광역푸드뱅크 2인

## 사.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(안 제14조)

- 동 조례 개정안 제14조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 먼저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9조 25)에 따라 매 3년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

5) **제9조의2(사업장에 대한 평가)**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시설·장비·인력 등의 안전관리 수준과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확보 수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 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 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
수행결과를 평가하도록 하며,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서울형 평가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.

- 이처럼 서울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 대한 평가는 이원화 되어있음.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는 2018년, 서울시 주관 평가는 2006년부터 기초푸드뱅크·마켓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음.
  - 평가내용으로는 시설.장비의 안전관리, 인력현황,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,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등이 있으며,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임.
-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,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  -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는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9조 2의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공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. 서울형 평가도 평가결과에 따른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.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u>제14조(평가) ① 시장은 법9조의2</u> <u>에 따라 매 3년마다 시행하는</u> <u>평가 주기에 맞춰 사업자의 기</u> <u>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결과를</u> <u>평가해야 한다.</u> <u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</u>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평가기준,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이외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  
행결과에 대한 서울형 평가도  
실시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장  
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  
· 재정적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 
취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  
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 
있다.

#### 아. 조례 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 : 원안동의

-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수정·보완한 내용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에서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의견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#### 3 종합의견

-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식품부터 생활용품까지 그 영역이 점차 넓혀지고 있으며, 경기침체 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증가로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. 이에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,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것에 대한 쟁점사항은 없음.

-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의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.
- 또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여,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문 의 처
허아름 입법조사관 (02-2180-8145)